

# 포천노곡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2023.9.)



# 포천노곡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포천노곡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포천노곡초등학교 교육공동체가 규칙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로운 학교 문화 속에서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신의 행동과 결정에 책임지는 책무성을 배우며,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역량을 증진시켜 균형있는 미래시민으로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제8조(학교규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 제 2장 학교 교육공동체의 책무

### 제4조 【정의】

- ①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②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③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④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 제5조 【교육 3주체의 책무】

-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6조 【학생 안전과 사생활 보호】**

1.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인의 교내 출입을 제한하거나, 출입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2. 학생은 지정시간에 등교 하교를 해야 하며 학생이 있는 교실에는 교직원 또는 학생 보호를 책임 할 수 있는 자가 입회해야 한다.
3. 학교는 학생 사고로부터 보호 및 안전 예방을 위한 시설 정비와 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4. 학교는 학생의 안전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장소를 누구나 알기 쉽게 표시한다.
5. 교육활동과 학생안전 이외에 허가 없이 사진 촬영, 영상 녹화, 녹음 등을 하여 타인의 사생활과 초상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상대의 허락이 없이 이를 유통시켜서도 안 된다.
6. 교직원은 일기장 등 개인의 개인적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 원칙으로 하며, 교육적 목적 상 필요한 경우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7. 학교 내 표현의 자유는 보장된다. 다만,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학교 공동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표현물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교외생활에 대한 보호자의 의무와 권리】**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릴 의무와 상담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교우관계, 평소와 다른 이상행동이 있을 시
2. 식습관 문제와 유해 매체(음란물, 폭력물, 게임) 중독 증상이 있을 시

## 제 3장 학생 생활

### 제1절 학생의 권리

**제8조 【학생 인권】** 포천노곡초등학교 학생들은 경기도교육청이 제정한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인권적 권리를 가지며 세부사항은 조례를 참조한다.

**1. 차별받지 않을 권리(조례 제5조)**

-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 구성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적 말이나 행동, 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인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2.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조례 제6조)

① 학생은 학교 내외 및 사이버 공간 등에서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③ 학교 구성원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학교폭력 및 체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3.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조례 제7조)

① 학교 구성원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 구성원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4. 학습에 관한 권리(조례 제8조)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학교 구성원은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5.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 있어 선택할 권리(조례 제9조)

① 학생은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 구성원은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6. 휴식을 취할 권리(조례 제10조)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 7. 개성을 실현할 권리(조례 제11조)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 8.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조례 제12조)

①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교직원(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직원(교직원)이 교육목적으로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하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직원(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개인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도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④ 학교 구성원은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제18조에 따라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

⑤ 학교 구성원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 **9.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조례 제13조)**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교육비 납부여부, 동의하지 않은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등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 구성원은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③ 학교 구성원은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10. 학생 정보에 관한 권리(조례 제14조)**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④ 학교의 장은 예·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11.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조례 제15조)**

① 학생은 세계관·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12.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권리(조례 제16조)**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 구성원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생은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 **13.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조례 제17조)**

① 학생은 동아리, 학생회 및 학생자치 조직의 구성, 소집, 운영, 활동 등 자치적인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 구성원은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14. 학생과 관련한 학칙,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조례 제18조)

-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정·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정·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정·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

#### 15. 학생의 권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조례 제19조)

- ① 학생은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③ 교장 등은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학생대표는 학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⑤ 학교 구성원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⑥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유권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6. 학교복지에 관한 권리(조례 제20조)

- ①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등 경제·사회·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 17.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조례 제21조)

-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적절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학생은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생태계 보존을 통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 18. 문화 활동을 향유할 권리(조례 제22조)

-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 19. 급식에 관한 권리(조례 제23조)

-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20. 건강에 관한 권리(조례 제24조)

-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권을 가진다.
- ②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학교 구성원은 생리 중에 있는 여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이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1. 징계 및 절차에서의 권리(조례 제25조)

-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에 대한 교육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22.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조례 제26조)

-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모든 학생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의 청구권과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④ 학생인권옹호관은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학교 구성원은 제1항의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결과를 청구 및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3. 소수 학생의 권리(조례 제27조)

- ① 학교 구성원은 빈곤, 장애,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교 구성원은 소수 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 ③ 학교 구성원은 장애 학생에게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④ 학교 구성원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⑤ 학교 구성원은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다문화가정 학생의 전입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절 학생의 의무

**제9조 【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제10조 【시설이용 및 환경】

- 1. 학교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 2. 다른 학생들이 쾌적하게 학습할 권리를 존중하여 교내 시설물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1.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권을 소중히 여긴다.
2. 학생들은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 제12조【교우관계】

1. 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 사이에 예의를 지키고 서로 존중한다.
2. 교우 사이에 욕설, 비어를 사용해 상대방을 모욕해서는 안 된다.

### 제13조【폭력예방】

1. 학생들에게는 신체상의 어떤 폭력도 허용되지 않으며, 정신적 폭력(집단 괴롭힘, 성적 희롱, 언어폭력, 사이버폭력)도 행해져서는 안 된다.
2. 집단 괴롭힘 등 모든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을 행하지 않아야 하며, 방조하지도 않아야 하며, 서로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 차렸거나, 발생했을 때에는 가까이 있는 교사에게 알려야 하며, 학교는 즉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14조 【양성평등】

1. 학생들은 양성평등 의식을 바탕으로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
2.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성폭력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학생들은 양성평등 교육에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

### 제15조 【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1. 교내 휴식 및 여가시간에는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해야 하며, 이용 규칙을 따라야 한다.
2. 교외 외출 시에는 담임의 허가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3. 다른 학생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4. 자신의 취미 활동 및 공동체 활동을 권장하며 건전하지 못한 사행 놀이(화투, 트럼프, 트레딩 카드, 도박, 물품거래, 돈 거래, 사이버머니 거래)는 금한다.

### 제16조 【용의복장】

1. 학생의 개성을 존중하며, 초등학교생으로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복장과 두발을 하도록 한다.
2. 기타 단체복의 착용 여부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구하며, 실시 및 실습에 적합한 복장을 취한다.
3.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스스로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 제17조 【학급 사회활동】



1. 학생은 학급환경 정돈 및 안정된 학급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2. 학생은 학급 사회활동에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3. 학생은 학급 비품 관리에 책임을 지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18조 【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학생자치회 담당교사에게 신고를 하여서 하도록 한다.

1. 교내에서 외부인과 회합 또는 행사를 하고자 할 때
2. 특별실을 수업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
3. 휴일 또는 방과 후 시간에 활동하고자 할 때

**제19조 【출결사항】**

1. 특별한 사유로 학생이 출석을 하지 못 할 때에 학부모는 출결 통지를 담임교사에게 할 의무가 있다.
2. 학교장허가 체험학습(연간 20일), 학교간교류체험학습(국내 연간 1개월) 시에 학부모는 학생들의 안전에 최대한 주의할 의무가 있다.

**제20조 【교외생활】** 학생은 교외생활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포천노곡초등학교 학생으로서의 금지를 갖고 바른 언행에 힘써야 한다.
2. 정규교과 시간에 본교 이외의 단체행사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3. 교통규칙, 공중도덕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4.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하지 않는다.
5. 유해 매체(음란물, 폭력물, 흉기, 화기 등)를 소지하지 않는다.
6.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물질을 휴대·흡입·복용하지 않는다.

**제21조 【사이버 생활】** 포천노곡초등학교 학생들은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아름다운 우리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헐박 등을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음란,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의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5. 타인의 정보와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자신의 개인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제22조 【정보·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컴퓨터는 수업 중 학습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해야 한다.
2.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와 전자기기 등의 소지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면학 분위기 조성

을 위하여 학업시간에 사용은 불허한다.

3. 휴대전화 및 정보 통신 기기를 활용한 허위사실 유포, 상대방 비방 및 욕설, 따돌림등의 행위를 하였을 시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본교의 휴대용 통신 기기 사용 규정에 따른다.

4. 교내 및 교외 학습활동 중에는 MP3와 같은 휴대용 음향기나 게임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23조 【학생 자치회】** 포천노곡초등학교 학생들은 학생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학생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학생 자치회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제반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고 시행한다.

2. 학생들은 자치회 활동 및 임원 선출과 관련하여 경제적, 신체적, 학업성적 그리고 성별 등 어떤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한다.

3. 임원 선출과 운영 및 관련 사안은 모두 ‘학생 자치회 규약’에 따른다.

4. 학생 자치회 대표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하는 바와 같이 ‘자치 및 참여의 권리’를 가진다.(조례 제6절)

## 제 4장 학생생활지도

### 제1절 생활 지도의 범위

**제24조 【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학업 및 진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2. 보건 및 안전: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 인성 및 대인관계: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4. 그 밖의 분야: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비행 및 범죄 예방,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 제2절 생활 지도의 방식

**제25조 【조언】**

①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 ③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④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26조 【상담】**

- ①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상담은 수업 외 시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장과 보호자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 ④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⑤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⑥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 3.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 ⑨ 보호자가 상담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7조 【주의】**

- ①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 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훈육 또는 훈계를 할 수 있다.
-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본다.

**제28조 【훈육】**

- ①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좌석 및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 2.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3.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교실 내 및 교실 밖 분리 방법 ]

생활 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1호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업 방해 행동 학생 또는 학생 간 말다툼 등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li> <li>※ 교사가 수업시간 중 2회 이상 조언, 주의 등의 방식으로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행동을 반복하는 학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실 내 지정된 좌석 및 위치</li> <li>■ 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 집단으로부터 분리</li> <li>※ 행동이 개선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된 좌석 및 위치로 이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좌석 및 위치에서 앉거나 선 상태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 참여</li> </ul>	
2호 지도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다음 시간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li> <li>※ 행동이 개선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회 이상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지 등 과제 부여</li> </ul>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여 제지가 어려운 경우</li> <li>■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li> <li>■ 교육 활동의 방해로 즉시 분리가 필요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무실 등 지정 장소로 분리</li> <li>※ 행동이 개선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등 지정 장소로 이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지 등 과제 부여</li> </ul>
3호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으로 복귀</li> <li>※ 가정으로 복귀가 어려운 경우 교무실 등 지정 장소에서 40분 간 지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통지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동성찰문</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학교 여건에 따라 시간대별로 교직원이 분담하는 방식 등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li> <li>※ 학교폭력 사안 발생시 학교폭력 처리 절차 매뉴얼에 근거하여 처리함.</li> </ul>				

- ⑧ 학교의 장은 학생이 3호 지도를 거부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⑨ 2호, 3호 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⑩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

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 ⑪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 ⑫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소지금지 물품(학칙으로 정한 물품)

### [ 학생 물품 분리 보관 규정 ]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제9조제3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당일 정규 교육과정 운영 시간	교실 지정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회차 : 주의 실시</li> <li>·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li> <li>·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li> <li>· 일과 종료 후 : 즉시 되돌려줌</li> </ul>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 빔 기기 등	3일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li> <li>·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li> <li>※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li> </ul>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li> <li>※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li> </ul>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음란물 등			

- ⑬ 학생 물품을 분리 보관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⑭ 학급담당교원(담임교사)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 제29조 【훈계】

- ①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제10조에 따른 상담, 제11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

12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 ③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 2. 성찰하는 글쓰기
  -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

### 제30조 【보상】

- ①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 제31조 【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제32조 【이의제기】

-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 제33조 【기타 사항】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34조 【보호자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

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죄해야 한다.

### 제 3절 학생생활교육

**제35조 【학생생활 교육 원칙】** 학생생활교육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생활교육은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2. 학생생활교육은 문제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3. 학생생활교육은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제36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목적】**

학생의 생활지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실행하고 학생생활교육은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의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이끌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제37조 【구성 및 운영】**

#### 1. 구성 및 임무

- 1) 각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필요한 수의 위원을 둔다.
- 2) 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학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부장이 되고, 위원은 5인으로 교직원 중에서 교무분장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 3)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고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 4) 학교장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 징계 및 그 밖의 선도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활지도 관련 각계 전문가, 지역사회 인사, 보호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5) 교원 중 위원회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둔다.
- 6) 구성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 2. 기능

- 1) 학생선도에 관한 사항 심의
- 2) 학생인권보호 및 학생선도에 관한 기본계획 심의
- 3) 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 3. 운영

- 1) 위원회 개최 시, 보호자에게 위원회 일시, 장소, 개최 이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단, 보호자의 동의를 있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문자 등으로 개최를 통지하고, 통지 사실과 방법, 내용을 기록한다.
-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한다.



- 4) 위원회는 심의 전에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와 방법을 마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5) 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은 반드시 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심의 결과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 6) 학교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이유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7) 학교장은 학생 및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조치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 8) 조치결정통지 시, 학교 내 재심의 신청, 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 재심청구(퇴학의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방법 및 청구 기간 등을 안내한다.
- 9) 학교 내 재심의 신청 횟수는 각 학교 실정에 따라 규정으로써 마련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회에 한한다.
- 10) 학교 내 재심의 신청 기간은 각 학교 실정에 따라 규정으로써 마련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치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로 정한다.

**제38조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및 의결】**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후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9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소집 사안】** 학교 규칙을 위반하여 학생생활교육 사안이 발생했을 때 소집하며 그 사안은 다음과 같다.

1. 학습권 침해(수업 방해, 학습 지시사항 거부 및 과제 상습 불이행)
2. 학교 기물 또는 구성원의 물건 파손, 절도
3. 시험 중 부정행위
4. 교직원 및 학교 교육 활동 지도(봉사)자에 대한 불손한 태도
5. 학교내.외에서 학생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각종 폭력 사안(폭력이라 함은 학교폭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폭력을 의미함)
6. 기타(게임.인터넷.음란물.휴대전화 중독, 흡연 및 음주, 약물 오남용)

**제40조 【학생 선도 절차】**

1. 사안발생

- 현장 인지 교사가 1차 관찰, 간단한 문답 등으로 사실 확인을 한다.
- 현장 인지 교사가 학교생활인권규정 위반의 경중 판단
  -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현장 지도 또는 담임교사에게 인계한다.
  -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에 인계한다.

2. 관찰면담

- 교생활인권 담당 부서 교사가 대상 학생을 관찰 및 면담하여, 학교생활인권 담당부서의 조사 실시 여부를 판단한다.

-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의 학교생활인권규정 위반의 경중 판단
  -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대상 학생이 충분히 반성하는 경우: 지도, 훈계로 종결한다.
  -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의 조사를 실시한다.

### 3.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의 조사

- 조사 방법
  - 대상 학생 및 참고인에 대한 면담 조사를 실시한다.
  - 학생 자기변론서와 교사 사실 확인서 작성을 요청하고, 이를 검토한다.
- 조사 과정에서의 유의 사항
  - 학생 및 그 보호자에 대한 권리 고지
    - : 조사되는 사안이 위원회의 선도 및 징계 사안이 될 수 있음을 고지한다.
    - : 사안이 위원회 심의 대상이라고 판단될 경우, 이를 보호자에게 통지한다.
  - 강압 및 거짓 회유에 의한 조사는 금지된다.
  -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대상 학생과 관련한 정보를 누설하지 아니한다.
  - 조사 시 2인 이상의 교사가 참여하는 것을 권장한다.
  - 여러 학생이 관련된 사안의 경우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조사를 실시한다.
  - 수업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부득이하게 수업시간에 할 경우에는 별도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 자기변론서 작성 시 유의 사항
  -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반드시 자필로 작성될 필요는 없으며, 보호자에 의한 작성 및 컴퓨터 등을 이용한 작성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대상 학생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 4. 위원회 회부 여부 판단

학교생활인권 담당 부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반 행위의 경위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원회 회부 여부를 판단한다.

### 5. 위원회 준비

- 학교생활인권 담당 부서 교사는 위원장에게 위원회 소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한다.
- 위 보고 시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한다.
  - 사안 발생 개요, 위반 경위 및 정도, 위반 조항
  - 학생 자기변론서 및 교사 사실 확인서 등
  - 그 밖에 학생 관련 참고 사항
- 위원장은 위원회 일시 및 장소를 결정한다.
-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 위원회 일시, 장소, 개최이유
  - 사안 처리 과정, 의견제출 기회,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

- 보호자가 참석할 수 없을 경우,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고지
- 보호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됨을 고지

## 6. 위원회 개최·진행

- 사안 설명 및 의견 진술
  - 간사의 사안 설명 및 위원의 질의·응답
  - 담임 등 기타 참고 교사의 의견 청취 및 위원의 질의·응답
  - 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 진술 및 위원의 질의·응답
- 심의
  - 사안 설명 및 의견 진술을 토대로 징계 여부 및 양정 심의
  - 그 밖의 학생 지도 방법 논의
  -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 위원은 대상 학생에 관한 정보, 심의 내용 및 결과, 그 밖에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에 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7. 심의 결과 확정

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학교장 결재

## 8. 학생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조치결정통지

- 조치결정내용, 결정 이유, 위반 조항 등
- 징계 조치 기간 및 징계 조치 기간에 학생이 해야 할 사항
- 학생 및 그 보호자의 유의 사항, 보호자 협조 사항 등
- 학교 내 재심의 신청, 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 재심청구(퇴학의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방법 및 청구 기간

## 9. 조치 이행

- 본 지침에 따른 조치를 실시한다.
- 조치 대상자, 조치 내용 등은 공고하지 아니한다.

**제41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학생생활교육 결정】** 생활교육위원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보호자(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와 기간, 방법 및 세부 사안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학생생활교육의 유보, 감경 및 해제의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다.
3. 초·중등 교육법 제 18조 제 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학생징계는

반드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소학생생활교육위원회, 학년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경미한 사안 처분이나 약식으로 징계처분을 금지한다.

가. 학교 내의 봉사

나. 사회 봉사

위의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또한 학교 내 봉사 처분의 경우 학습권을 제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교내 봉사로는 아침맞이 교문인사, 도서관 책 정리, 급식실 봉사, 학급도우미, 캠페인 참여 등 이에 준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

#### 제42조 【징계 조치 별 내용 및 유의사항】

##### 1. 학교 내의 봉사

- 1) 1일 2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학교 실정에 따라 총 1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2) 수업 이외의 시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교장의 판단으로 달리 실시할 수 있다.
- 3) 학생의 학교생활인권규정 위반 내용 및 정도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 2. 사회봉사

- 1) 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회봉사 실시 기관의 운영 사정 등에 따라 총 25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2) 학교 밖 행정 및 공공기관 등 봉사활동 인정기관에서 실시한다.
- 3)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 교사는 사전에 사회봉사 실시 기관의 방문 등을 통하여, 학생의 학교생활인권 규정 위반 내용 및 정도에 부합하고, 반성 및 개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확인한다.

##### 3. 특별교육이수

- 1) 총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하며, 경기도교육감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지침의 교육 방법 등을 따르도록 한다. 다만 특별교육이수 실시 기관의 운영 사정 등에 따라 달리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2) 교육감이 지정하거나 위탁한 기관에서 실시한다. 또는 학교장이 학생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인정한 학내외 특별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콜 중독치료·심리치료 및 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3)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 교사는 사전에 특별교육이수 실시 기관을 방문 등을 통하여 학생의 학교생활 인권규정 위반 정도에 부합하고, 반성 및 개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등을 확인한다.

##### 4. 출석정지

- 1)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한다.

- 2) 출석정지 기간에도 학생의 교육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하며, 출석정지 기간에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및 교육 방법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3) 출석정지 기간에도 담임교사 등은 수시로 학생 및 그 보호자와 상담을 진행하여 학생의 반성 및 행동개선을 지원한다.

**제43조 【재심의 부의】** 관련 학생은 교육위원회 및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초·중·등 교육법 제 18조 2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 2항)

**제44조 【학교 내 재심청구】**

1. 교육위원회의 조치결정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그 조치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이의제기는 청구사유와 함께 서면으로 제출하며 1회로 제한한다.
3. 교육위원회 조치 결과는 조치이행 후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4. 학교장은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재심을 신청하면, 학생에 대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계조치를 유보한다.

**제44-2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1. 행정심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2. 행정소송: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45조 【학생생활교육 내용 통보】** 학생생활교육 및 징계가 확정되면 학생 보호자에게 학생생활교육 및 징계 내용을 서면 통보한다. 단, 학생생활교육처분 결과는 공고할 수 없다.

**제46조 【추수지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수지도를 한다.

1. 학생생활지도 담당교사는 학생생활교육 학생 및 가해학생, 피해학생 등을 일주일 간격 또는 그 이상의 기간 간격으로 3회 이상 상담을 한다.
2. 학생생활지도 담당교사는 선도 학생 및 가해학생, 피해학생과의 상담 누가 기록을 작성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제 5장 개정방법

**제47조 【규정의 개정】** 본 규정은 다음과 같이 개정을 할 수 있다.

1. 재직 교원 1/3 이상의 발의 또는 학생자치회 대표자위원회 2/3 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 학교생활인권규정개정심의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시에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학생자치회, 전체 교직원 회의, 학교홈페이지 공지, 공개토론회 등의 공개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3. 학교생활인권규정개정심의 위원회는 학생.교원.학부모.전문가 대표가 포함된 8~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호선한다. 또한 학생의 수가 반드시 위원회의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여야 한다.
4. 학교생활인권규정개정심의 위원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만들 수 있으며, 최종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확정한다. 이때, 학생 대표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5. 확정된 규정안은 학생, 교원, 학부모에게 학교 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을 통해 공포하며, 규정안은 공포 즉시 효력을 가진다.

**제48조 【기타 규정】**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정일】** 이 규정은 2010년 12월 21일에 개정되어 시행한다.

**【개정일】** 이 규정은 2011. 5. 26일에 개정되어 교육감의 승인을 득한 후 공포, 시행한다.

**【개정일】** 이 규정은 2013. 6. 24일에 개정되어 교육감의 승인을 득한 후 공포, 시행한다.

**【개정일】** 이 규정은 2013. 11. 25일에 개정되어 교육감의 승인을 득한 후 공포, 시행한다.

**【개정일】** 이 규정은 2017. 9. 10일에 개정되어 시행한다.

**【개정일】** 이 규정은 2019. 6. 20일에 개정되어 시행한다.

**【개정일】** 이 규정은 2019. 11. 26일에 개정되어 시행한다.

**【개정일】** 이 규정은 2021. 4. 12일에 개정되어 시행한다.

**【개정일】** 이 규정은 2022. 4. 6일에 개정되어 시행한다.

**【개정일】** 이 규정은 2023. 7. 21일에 개정되어 시행한다.

**【개정일】** 이 규정은 2023. 4. 6일에 개정되어 시행한다.

**【개정일】** 이 규정은 2023. 9. 27일에 개정되어 시행한다.

**【개정일】** 이 규정은 2023. 10. 17일에 개정되어 시행한다.